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

# 습기로운 보육활동 보호생활

3편: 협박 / 명예훼손·모욕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



## 보육활동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협박**

### 개념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법적근거 : 형법 제283조(협박)

### ● 협박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input type="checkbox"/>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의 위협을 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 폭언의 경우, 단순한 욕설을 넘어 보육교사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내용이 포함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 예시

- 보육교직원에게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통고하는 것
-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거나,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을 올려 보육교사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 아이 아버지가 찾아와 다짜고짜 '그만두게 하겠다', '신고해서 책임지게 하겠다', '인터넷에 다 퍼뜨리겠다' 라고 해서 실제 두려움을 느낀 경우

## 현장사례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는 원아가 있어 식판을 정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서는 교사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 판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장래의 해악을 고지하여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  
따라서 협박죄의 기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참고: 협박죄 처벌 관련

### 「형법」에 따른 협박죄 처벌

- 「형법」 제283조(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타인을 협박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 보육활동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예훼손·모욕

### 개념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법적근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죄)

####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input type="checkbox"/>
특정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input type="checkbox"/>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글로 적었거나 전달	<input type="checkbox"/>

#### ● 모욕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input type="checkbox"/>
특정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비난, 비하, 무시, 경멸적 표현을	<input type="checkbox"/>
언어적, 비언어적, 시각적으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 보육활동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예훼손

### 예시

- 다른 부모들에게 'OOO교사가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당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 학부모들 모임에서 'OOO교사 인스타그램 보니까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한 경우

### 현장사례

"한 재원생 학부모가 보육교사의 근태상황을 외부인을 통해 파악한 후 정확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다른 보호자들에게 유포해서 담임교사가 다른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많이 힘들어했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 보육활동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욕**

### 예시

- 원장 및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메신저 프로필이 교사답지 못해요”라고 말하여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선생님 보조교사죠.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은 있으세요?’라고 묻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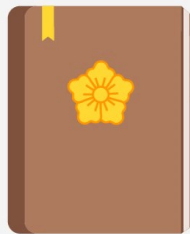
### 현장사례

”재원생 아버님께서 사전 연락도 없이 평소 하원시간보다 1시간 일찍 데리러 오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아이 하원 준비를 해서 데리고 나왔더니 아이가 늦게 나왔다고 화를 내시며 다른 보호자들 앞에서 교사에게 XXX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 판례



-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  
다만 그것이 공익과 관련된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말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음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515 판결 참조]

-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감정이 담긴 추상적 표현 또는 경미한 수준의 표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할 만큼 심대한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2.8.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참조]



## 참고: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관련

###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처벌

####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에 따른 모욕죄 처벌

####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